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온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온천법 개정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경미한 변경사항,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온천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천공보호구역의 경미한 변경사항 구체화(안 5조제3항 신설)

- 1)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공보호구역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전체 면적의 10% 이내에서 증감하는 경우로 규정

나.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구체화(안 6조의2 신설)

- 1) 연간 매출액, 영업정지기간 등을 고려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
- 2) 서면통지, 납부기간 등 과징금 부과 방법 및 절차를 규정

다.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구체화(안 14조 개정)

- 1) 온천발견신고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을 명확히 함.
- 2) 예치기간 연장 사유, 지하수개발허가 예치 근거 등을 보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입법예고전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예정

3) 행정규제 : 신설 및 강화 규제 없음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5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온천공보호구역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해당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의2를 제6조의3으로 하고 제6조의2와 별표 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부과에 근거가 되는 조항 및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③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굴착허가 및 온천이용허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부터 그 허가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21조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경우 : 온천발견신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하수 개발 허가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2조제1항제6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조례"로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조례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개정한다.

부 칙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영업정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과징금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다. 연간 매출액(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전체 연간 매출액을 말한다)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사업이나 휴업 등으로 연간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매출액을 환산한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목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사업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목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 등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사업자가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반복해서 처분 받은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구조문대비표

2. 과징금 산출기준

등급	연간 매출액	1일 과징금 금액
1	5억원 이하	10만원
2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3	10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20만원
4	1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25만원
5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30만원
6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40만원
7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50만원
8	50억원 초과 ~ 60억원 이하	60만원
9	60억원 초과 ~ 70억원 이하	70만원
10	70억원 초과 ~ 80억원 이하	80만원
11	80억원 초과 ~ 90억원 이하	90만원
12	9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100만원
13	100억원 초과	110만원

현 행	개 정 안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② (생략) 〈신설〉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② (현행과 동일) ③ 법 제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온천공 보호구역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해당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의2(온천도시의 지정) (생략)	제6조의2(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부과에 근거가 되는 조항 및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

현행	개정안
	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의3(온천도시의 지정) (현행 제6조의2와 같음)
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 ② (생략) ③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법 제21조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경우 : 온천발견신고일부터 온천발견신고 수리일까지 ④ (생략) ⑤ (생략) 〈신설〉	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굴착허가 및 온천이용허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부터 그 허가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21조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경우 : 온천발견신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④ (현행과 같음) 다만, 개발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하수 개발 허가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2조(수수료) ① (생략) 1. ~ 5. (생략)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제22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금액

현행	개정안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조례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

〈의안 소관 부서명〉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연 락 처	(044) 205 - 3522